

〈복지용구제품〉

제1조. (제품안내 및 정보게시, 제품홍보에 관한 사항)

①복지용구의 구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.

1. 이동변기 [내구연한5년]
2. 목욕의자 [내구연한5년]
3. 안전손잡이[연간10개]
4. 미끄럼방지용품 [연간5개],미끄럼방지양말[연간6개]
5. 간이변기[연간2개]
6. 욕창예방방석[내구연한3년]
7. 자세변환용구[연간5개]
8. 지팡이[내구연한2년]
9. 성인용보행기 [내구연한5년, 연한내2개]
- 10.요실금팬티[연간4개]
- 11.욕창예방매트리스[내구연한2년]
- 12.경사로 (살내용)[내구연한2년 6개]
- 13.구장세척기 (마우스피스형) [내구연한5년]
- 14.기저귀센서[내구연한3년]
- 15.배회감직(태그형)[내구연한2년]

②복지용구의 대여품목은 다음과 같다.

1. 수동휠체어
2. 욕창예방매트리스
3. 이동욕조
4. 목욕리프트
5. 배회감지기
6. 경사로 (실외용)

제2조 (복지용구 한도액 및 급여기준)

- ① 수급자(급여대상자)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수급자 1인당 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② 구입 품목 중 미끄럼방지 양말은 6개, 미끄럼방지매트 및 자세변환용구는 5개, 간이변기는 2개, 안전손잡이는 4개, 요실금팬티는 4개로 연 한도갯수를 초과 하여 구입 할 수 없다.